제14장 유해행위

- 제148조 [부정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제1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경기(제13장 소정의 경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있어 고의적 인 방법으로 패배를 기도하거나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 히 하는 행위
 - 2. 경기의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의 내용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3. 직접 출장하거나 관여하는 경기인지를 불문하고 경기에 내기나 도박을 하는 행위
 - 4.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5.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6.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 나.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 및 사이트 설계·제작·유통행위
 - 다. 불법스포츠 도박 홍보 및 구매중개 알선행위
 - 라.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위하여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마. 스포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관계자 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
 - 바. 마목과 관련하여 승부조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사.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경기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7. 제48조에 따른 사해행위
 - 8. 기타 위 각 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 시키는 행위

- 제149조 [보고의무] ①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제148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구단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구단 및 보고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총재는 제148조 각 호의 부 정행위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당해 부정행위가 구단이 관 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경고
 - 2.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3. 제명. 다만,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 한다.
 - ②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의 제재를 가한다.
 - ③ 구단 임직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직무정지
 - 2. 금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한 제재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⑤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⑥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

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⑦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퍼센트를 제6항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 위원이 마약범죄, 병역비리, 인종차별, 폭력,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 표의 예에 따라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 각 제재 내용은 병과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 도박 (불법인터넷 도박 및 일반 도박 등) | ① 1회 위반시: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② 2회 위반시: 출장정지 7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③ 3회 이상 위반시: 실격처분 ④ 기타: 직무정지 |
| 폭력행위 (가정폭력, 경기 외적 폭력 등) 및 성범죄 | ① 가정폭력, 경기 외적 폭력 |

| 구분 | 내 용 |
|-------------------|---|
| 마약범죄 | |
| (향정신성 의약품, | 실격처분, 직무정지 |
| 대마 등) | |
| 병역 비리 | 영구실격, 직무정지 (단, 구단 직원이 연루되었을 경우: 직무정지 1년 이상, 구단이 연루되었을 경우 : 제재금 1억 이상) |
| | ① 단순 적발: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
| | 봉사활동 80시간 |
| | ②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확정시) |
| | : 출장정지 7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
| | ③ 음주 접촉 사고: 출장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
| 음주운전 | 봉사활동 180시간 |
| | ④ 음주 인사 사고: 출장정지 120경기, |
| |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 |
| | ⑤ ①~④항 중복시 병과 |
| | ⑥ 2회 발생시: ①~④ 적용 항의 제재수준보다 |
| | 기중처벌 |
| | ⑦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
| | ⑧ 기타: 직무정지 |
| 사기, 배임 등 |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
| 경제범죄 |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
| 도핑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
| 7-9 | 따라 제재 |
| 교육 및 행사 | ① 부정행위 방지, 스포츠윤리교육, 도핑 등 KBO가 |
| 불참시 |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불참시 제재금 10만원 부과 |
| | ② 단, 총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
|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 ① 1회 발생시: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
| | ② 2회 발생시: 출장정지 2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
| |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 |

| 구분 | 내용 |
|--------------------------------|---|
|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 ③ 3회 이상 발생시: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
| 종교적 차별행위, 인종 차별적 언행 등 | ① 1회 발생시: 엄중경고 및 제재금 200만원 ② 2회 발생시: 출장정지 5경기 이상, 제재금 300만원 ③ 3회 이상 발생시: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이상 |
| 심판 또는 리그 비방 | ① 1회 발생시: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② 2회 발생시: 출장정지 2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 ③ 3회 이상 발생시: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
|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① 1회 발생시: 엄중경고 또는 제재금 200만원 ② 2회 발생시: 제재금 500만원 이상 |
| 기타 |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범죄 등의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필요한 사회교육 프로 그램을 KBO가 지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참가활동정지시 보수 지급도 정지되며, 이후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재에 관한 모든 결정과 관련하여 총재는 경중과 심각성에 따라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 특히 품위 손상행위에 대한 총재의 제재가 있은 후에 그 행위를 이유로 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는 경우 총재는 그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

| 구분 | 내용 |
|----|---|
| 기타 | ①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범죄 등의 위법행위(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 ③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2015.1.13 → 2017.1.17 → 2018.9.11 개정]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한 경우 총재는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다.

- ②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대하여 제150조 제1항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③ 총재는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소속구단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상벌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 ⑤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1992.2.27 → 2003.6.5 → 2004.9.21 → 2009.3.4 → 2012.3.13 → 2014.4.10 → 2017.1.17 개정]